

#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7. 4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최근 생계형 사건·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,
-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으로 사회복지 종합기획·조정기능 보강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7명을 증원함(안 제2조)

구 분	현 행	조 정	증 감
정원의 총수	651명	658명	7명
1.집행기관의 정원	637명	644명	7명
2.의회사무기구의 정원	14명	14명	-

나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「별표1」에 규정함.(안 별지)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근거
  - 사회복지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(2005. 4. 25)

## 4. 본 문

- 덧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651명”을 “658명”으로 하고, 같은조 제1호중 “637명”을 “64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651명</u>이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37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658명</u> 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<u>644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:</p>

[별표 1]

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과	직 속 기 관	사업소	읍	면
<b>정무직 계</b>	1	1					
군 수	1	1					
<b>일반직 계</b>	531	246	8	80	25	24	148
4급	1	1					
4~5급	2	1		1			
5급	34	12	3	3	2	1	13
6급	138	68	2	11	5	5	47
7급	158	82	1	23	6	5	41
8급	129	58	1	34	7	7	22
9급	69	24	1	8	5	6	25
<b>별정직 계</b>	14	1		13			
6급상당	1	1					
6~7급상당	12			12			
7급상당	1			1			
<b>연구직 계</b>		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						
<b>지도직 계</b>	25			25			
지도관	2			2			
지도사	23			23			
<b>기능직 계</b>	87	51	6	7	7	2	14
기능6급	3	2	1				
기능7급	8	8					
기능8급	16	13			3		
기능9급	26	15	3	3	1	1	3
기능10급	34	13	2	4	3	1	11